

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2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2. 12

다. 상 정 일 자 : 2003. 12. 12

(제119회 화순군 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조 규 문

나. 제안사유

- 사회전반에 걸친 성차별적 관행과 의식개선을 위해 그동안 관례적으로 시행되어온 법과 제도에 의한 남녀차별규정을 제거함으로써 21세기 남녀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화순군직장협의회 협의위원 선임기준을 개정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21세기 남녀평등사회 구현에 걸맞게 직종별, 직급별,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토록 되어 있던 협의위원 선임기준 조항을 개정함. (안 제8조 제3항)
- 여성공무원의 협의위원 선임 비율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함. (안 제8조 제3항의2호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장현범)

- 현행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조 제3항 제2호는 현실과 맞지 않아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7. 첨부 :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8조 (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)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협의회는 구성원의 직종별·직급별 비율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·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 (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협의회는 구성원의 직종별·직급별·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</p> <p>1.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·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할 것</p> <p>2. 여성공무원의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.</p> <p>④~⑤ (생략)</p>	<p>제8조(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협의회는 구성원의 직종별·직급별 비율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·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④~⑤ (현행과 같음)</p>